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667호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0.03.02.~2020.03.17. (15일간)
3.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납기	체납액	반송사유
성명	주 소			
신☆수	서울특별시 성대로6다길28 303호	8	413,940원	폐문 부재

5. 의견제출 안내
 -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재산압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45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01호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616호(2019. 6.13.)로 열람공고하고,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1.6.)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및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1.16.)심의결과 (수정가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장

I. 열람 기간: 2020. 3. 6. ~ 2020. 3. 1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 (☎02-2133-6296)

III.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9.8	-	1,499.8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9.8	감)1,499.8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1,499.8	1,499.8	100.0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신림동 1644-3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499.8	• 용도지역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IV.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644-3	-	증)1,499.8	1,499.8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비고
신설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1,499.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9.8	-	1,499.8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1,499.8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증)1,499.8	1,499.8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	-	관악구 신림동 1644-3	1,499.8	단독개발 지정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단독개발 지정 -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 - 면적1,499.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개발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지정용도	비고
지정용도(A)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B)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 이와 비슷한 게임관련시설	

구분	지정용도	비고
지정용도(A)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불허용도(B)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장례식장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림동 1644-3에 한하여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 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이하	•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 70m이하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 기본용적률: 680%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70m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대상지의 높이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여 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75.61㎡ (25.04%)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0%이상~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10.61% (지상1~지상2층 비주거 설치)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비주거 =9,349.02㎡(89.39%):1,110.21㎡(10.61%) -비주거비율 10% 이상 20%이하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28.14%(70세대) : 71.86%(170세대) • 공공임대주택: 전용 16.56㎡, 32.82㎡ • 민간임대주택: 전용 16.56㎡, 18.72㎡, 32.82㎡, 31.7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 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 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 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 해 10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 커뮤니티시설 102.51㎡ 계획 - 용도: 공용휴게실 및 주민회의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라. 공공기여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5% 이상 (374.95㎡)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25.04%(375.61㎡)	•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
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서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 동측(8m) 도로변: 구역경계로부터 3m 후퇴	3m	• 보도형 조성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타	•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 제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V.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